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45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충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시 회수 의무 및 제재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16.

3. 회 부 일 : 2025.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시 회수 의무 및 제재 근거 마련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영업자에게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의2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3조의2(동물복지축산물의 회수)</u> ① 판매의 목적으로 동물복지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제6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동물복지축산물·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7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 10.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01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8.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의3.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9. (현행과 같음)

③ -----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 물 표시를 한 자	<삭 제>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같음)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
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¹⁾,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고기·계란·우유 등이 일정한 운송·
도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물복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²⁾ 다만, 인증 없이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거나 허위·

- 1)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
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
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2)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①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축산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 나. 농장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
- 다. 농장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것

과장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표시 형식의 일부 오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³⁾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이 ‘동물복지’ 표시로 유통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의 축산물: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료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지판 또는 푯말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수(개소)

구분	'19	'20	'21	'22	'23	'24
합계	262	297	364	423	451	485

* (24년, 인증농장) 산란계 253개소, 육계 162, 양돈 28, 젓소 30, 한우 12

- 3)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8.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11.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위·부정확한 표시 행위는 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훼손하고 성실한 인증 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재 수단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영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품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허위보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상향 조정(기존 500만 원 또는 300만원 → 1천만원 또는 500만원) 하려는 것으로,

영업자의 시정조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물복지축산물 역시 「식품위생법상」 식품⁴⁾에 해당하므로 허위 또는 과장 표시된 축산물의 경우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⁵⁾ 이미 시정명령, 회수조치 및 회수계획 보고 등 일정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동법 및 유사입법례 제재 수준 비교]

근거법률	제재수준	위반 행위
동물보호법	500만원이하 과태료	인증농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경우 (제101조제1항제8호)
	300만원이하 과태료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01조제2항제9호)
식품표시광고법 제15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제31조제1항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자(제47조제2항제1호)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2항제1의3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제47조제2항제10호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00만원 이하 과태료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제47조제1항제2호의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29조제1항제7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 표시 기준 위반 시 회수 의무 규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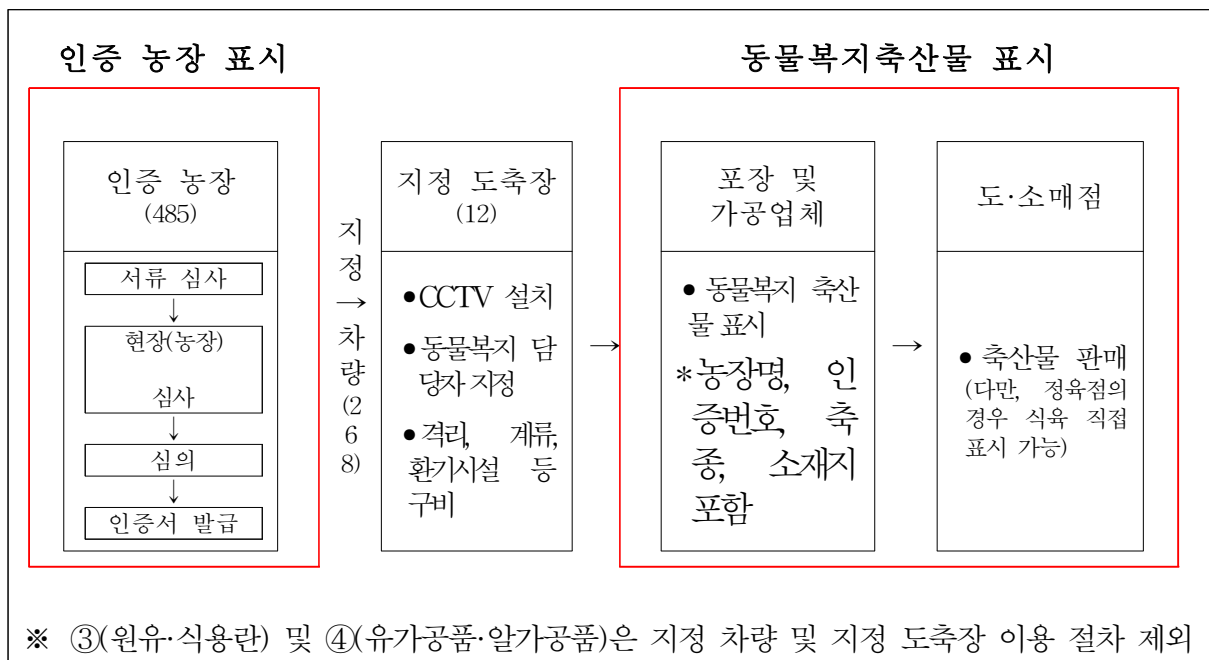
참고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등

□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요건

구분	표시 요건
①식육·포장육	①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 ②지정된 운송 차량 및 도축장 이용
②식육가공품	①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 ②지정된 운송 차량 및 도축장 이용 ③동물복지축산물 원료 50% 이상 사용 * 동일 종류 미인증 원료 혼합 시 표시 불가
③원유·식용란	①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
④유가공품·알가공품	①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 ②동물복지축산물 원료 50% 이상 사용 * 동일 종류 미인증 원료 혼합 시 표시 불가

□ 동물복지축산물 유통 및 관리 체계



참고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 정 의

- 동물복지는 동물이 자연 본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본래의 습성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것(세계동물보건기구)
- (법적근거)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 관련고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추진현황

-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의 문제해결, 동물의 건강한 사육과 윤리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12년)
 - * 인증축종 : ('12)산란계→('13)양돈→('14)육계→('15)한·육우, 젖소, 염소→('16)오리

□ 인증조건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적정사육밀도, 사양환경, 동물의 본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장

□ 인증절차

- 축산농가 → 인증기관(축산환경관리원) → 서류심사 → 현장 심사 → 인증서 교부
- 인증업무 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24.4월)
 - * 이관사유 : 농장수 증가, 일부 지역편중, 점검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업무 추진 애로
 - ** 선정사유 : 축산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시설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농장방문 조사·컨설팅 등 농장과의 접점이 높아 업무의 효율적 추진 가능

□ 사후관리

- 사후관리(점검)/ 매년 1회, 3년마다 인증 재심사(인증 유효기간 3년)

□ 인증현황('24년 기준)

구분	합 계	산란계		육계		돼지		젖소		한우	
	농가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전국농가	91,802	953	79,003천수	1,431	88,975천수	5,513	10,846천두	5,431	381천두	78,474	3,340천두
인증농가	485	253	5,797천수	162	12,252천수	28	115.2천두	30	44천두	12	1.2천두
비율	0.53	26.5	7.3	11.3	13.8	0.5	1.1	0.55	1.15	0.015	0.036

* 연도별 현황(누적) : '15년 76호 → '17년 145 → '19년 262 → '21년 364 → '23년 451 → '24년 485